



2006년도
명저번역지원사업 신청요강

2006. 3.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명저번역지원사업

주요사항 요약 및 신·구대비표

항목	2005년	2006년	비고
1. 신규과제 지원예산	○ 1,321백만원	○ 1,450백만원	
2. 지원방향	○ 번역지정도서에 한하여 공모 ○ 번역연구비 신청제한액 폐지 ○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제도 구축 ○ 연구결과의 공유 및 사회화 확산	○ 번역지정도서에 한하여 공모 ○ 번역 연구비 자율 신청 ○ 번역 원고에 대한 엄정한 평가 실시 ○ 연구성과를 대중에게 확산	
3. 지원분야	○ 기초학문분야 (단, 우리 고전은 기초학문 지원사업에서 지원함)	좌동	
4. 지원대상	○ 번역업적과 번역 능력이 우수한 연구자	좌동	
5. 신청자격	- 최근 5년간 번역 출판물이 1종 이상인 자 - 연구실적이 2편 이상인 자	- 최근 10년간 단독 번역출판물 1종 이상인 자 - 공동 번역물 1편과 연구실적 1편 이상인 자	
6. 지원규모 (년/과제당)	○ 번역과제의 분량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자율신청(신청연구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적정연구비 지원)	좌동	
7. 지원기간	○ 1~2년 (단, 2년 과제는 지원비 가용예산의 50% 이내로 선정함)	좌동	

항목	2005년	2006년	비고
8. 제출 자료 및 방법	○ 제출 자료 - 번역연구계획서 7부 - 번역업적물 1종 - 번역대상도서의 번역한 부분 원문사본 및 번역원고 각 7부 ○ 제출 방법 - 신청기관을 통해 재단으로 우편 제출	○ 제출 자료 - 번역연구계획서 - 번역업적물 - 번역대상도서의 번역한 부분 원문사본 및 번역원고 ○ 제출 방법 - 온라인 파일 탑재 및 신청기 관 통해 재단으로 우편제출	
9. 심사절차	○ 1단계심사 (요건심사) - 신청자격 여부 ○ 2단계심사 (번역전공심사) - 번역업적, 번역연구비, 번역계획서 심사 ○ 3단계심사 (종합심사) - 예산배정 및 선정기준 확정	좌동	
10.번역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당초번역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 평가방법 - 전문가 패널 평가 ○ 평가결과 - 평가등급에 따라 출판가능 여부결정	좌동	

차 례

I. 사업목적 및 지원 방향	1
1. 사업목적	1
2. 지원방향	1
II. 사업 내용	2
1. 지원분야 및 대상	2
2. 지원예산	3
3. 지원규모 및 기간	3
III. 신청	3
1. 신청자격	3
2. 신청기간	4
3. 신청방법	4
4. 신청절차	4
5. 연구비 신청 및 연구참여 제한	7
IV. 심사 및 선정	8
1. 심사절차	8
2. 심사방법 및 내용	9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0
1. 번역연구비 지급	10
2. 번역연구비 관리	10
VI. 보고서 제출 및 평가.....	11
1. 중간보고서 제출 및 평가	11
2. 번역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12
3. 연구결과 발표물 출판	13
4. 연구성과 Follow-up 시스템	13
VII. 간접연구비 지원	14
VIII. 기타 사항	14

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1. 사업목적

- 학문의 기초이론과 선현들의 사상 등이 담긴 동서양의 명저를 체계적으로 번역, 보급하여 번역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 인문학 부흥의 전기를 마련함
- 자연스러운 우리말 번역을 통해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고 상세한 역주(譯註)를 통해 학술번역의 전범을 수립함

2. 지원방향

- 조사연구를 통해 번역대상도서(Top-Down)를 확정하고 지정도서에 한정하여 공모 및 지원
- 번역연구에 필요한 실질적 연구비의 자율 신청으로 우수 결과물의 창출 유도
- 번역원고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연구성과를 대중에게 확산

II. 사업 내용

1.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지원분야 : 기초학문분야의 학술명저에 대한 한글 번역

※ 단, 우리 고전은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에서 지원함

나. 지정도서 목록 : 300종 내외(지정도서에 한해서만 신청가능함)

※ 2006년 지정도서 목록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된 동서양의 학술명저를 검토하여 5월중 확정 공고 예정

☞ 번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번역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서를 연중 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를 통해 추천받고 있습니다.

다. 지원대상 : 번역업적과 번역 능력이 우수한 연구자(신청자격 참조)

라. 지원형태 : 단독 또는 공동연구

- 번역연구자의 문헌해제, 역자주 반드시 포함
- 원전에 의한 직접번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역본을 통한 보완 인정

2. 지원예산 : 1,450백만원 (40종 내외, 출판 지원비 포함)

3. 지원규모 및 기간

가. 지원규모 : 번역과제의 분량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자율신청

- ※ 200자 원고지 1매당 번역료 : 7,000원 ~ 12,000원(시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산정)

나. 지원기간 : 1~2년

- ※ 연구개시일 : 11월 1일
- ※ 단, 2년 과제는 지원비 가용예산의 50% 이내로 선정

Ⅲ. 신청

1.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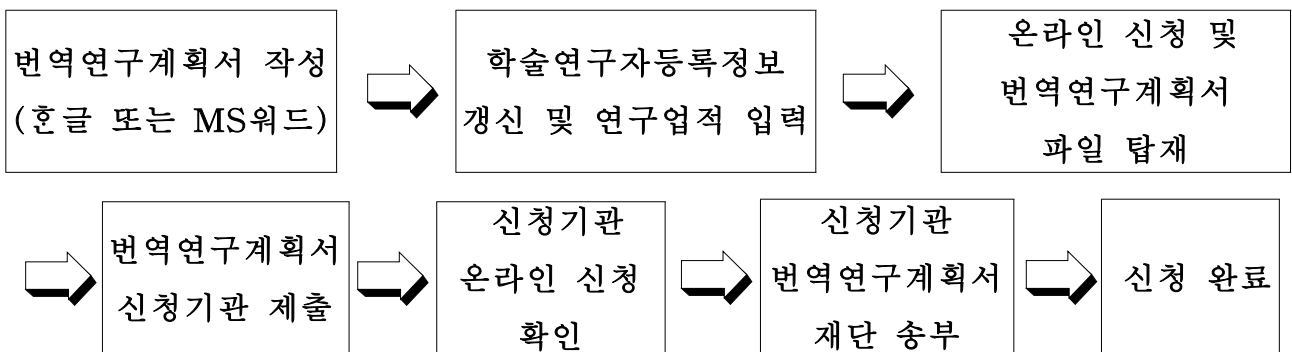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자에 한함

- 1996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단독 번역출판물이 1종 이상인 연구자 또는
 - 공동 번역출판물이 1종 이상인 자로서 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SCI급(A&HCI, SSCI 및 SCIE 등) 등의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등록 완료된 외국 특허 또는 전문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등의 연구 실적이 1편 이상인 연구자
- 단, 박사학위를 소지한 비전임 연구자(시간강사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 등)는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를 계획하는 경우에 한해 번역업적이 없어도 상기의 연구 실적이 2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함
- ※ 단독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2편으로, 공동저서 및 역서는 연구실적 1편으로 산정함
- ※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및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는 심사시 참고할 만한 소명서를 온라인 연구지원 신청시 입력하여야 함

2. 신청기간 : 2006. 6. 22(목) 09:00 ~ 7. 6(목) 18:00까지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번역연구계획서 제출

4. 신청절차



가. 온라인 신청 전

- 1) 재단 홈페이지 「통합연구인력정보」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신청 후 추가 등록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취소하시고 다시 신청하여야 함)
- 2) 온라인 신청시 번역연구계획서 작성 파일을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훈글」, 「MS워드」, 「PDF」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단 소정 양식으로 미리 작성 하여야 함(PDF 파일로 탑재하는 것을 권장함)

- 3)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자격으로 연구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함. 단,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학술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온라인 신청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함)
- 4) 시간강사는 연구지원 신청기관을 정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와 연구비 신청과 선정 후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과 선정 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온라인 신청

- 1) 연구지원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연구자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사항"을 입력하고, 아래의 파일을 온라인 탑재하여야 함. 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
 - ① "번역연구계획서(연구업적 요약문 포함)" (붙임3, 붙임4 양식 참조)
(hwp, doc 또는 pdf 파일)
 - ② 번역대상 도서의 번역한 부분 원문(목차 포함) (붙임 5)
(스캔하여 pdf 파일 탑재)
 - 서양서 : 원문의 핵심적인 부분 30페이지 이상
 - 동양서 : 원문의 핵심적인 부분 15페이지 이상
 - ③ ②번 내용에 대한 번역 원고 (붙임 6)
(hwp, doc 또는 pdf 파일)
 - ※ 위 세 개의 파일은 각각의 파일로 작성하여 탑재함(총 3개의 파일)
- 2)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학술단체(학회 등)를 통한 연구비 신청은 제한함. 부득이 신청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입력해야 함
- 3) 대표업적은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업적 중에서 "Ⅲ-1.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업적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모두 선택해야 함
- 4) "신청 연구비" 입력 시 200자 원고지 1매당 번역료와 예상원고매수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6) 학술단체를 통하여 연구비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기기 및 학술문헌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 활용계획(비치장소 포함)을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해야 함
- 7)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신청 마감일 종료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8)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9) 기한 내 번역연구계획서 미 탑재과제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됨

다. 온라인 신청 후

- 1) 연구자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탑재한 파일의 모든 내용 포함) 1부를 출력하여 아래 제출 서류와 함께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 제출함
- 2)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신청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는 신청자로부터 신청 입력내용(계획서, 업적요약문 포함) 1부를 제출받아 아래의 기한 내에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해야하며, 만일 확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기관 확인 시한 : 2006. 7. 10.(월) 18:00까지**
 - 해당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제출 받은 입력내용(계획서 포함) 1부와 신청자 명부를 출력하여 보관함

라. 서류제출

- 1) 제출방법 : 별첨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 기관장을 통해 재단으로 일괄 우편 제출
- 2) 제출서류
 - 연구진의 대표적 번역 업적물(출판물) 1종
 - 번역연구계획서 및 연구업적 요약문 각 7부 (붙임2, 붙임3, 붙임4)
 - 번역대상도서의 번역한 부분 원문사본(목차포함) 및 번역원고 각 7부 (붙임 5, 붙임6의 내용을 출력하여 제출)
 - 서양서 : 원문의 핵심적인 부분 30페이지 이상
 - 동양서 : 원문의 핵심적인 부분 15페이지 이상
- 3) 제출기한 : 2006. 7. 13.(목) 18:00까지
 -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에 대한 연구업적요약문을 연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신청자 및 연구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구비 신청 및 연구 참여제한

가. 연구비 신청 제한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단,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재단의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박사후 국외연수지원,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의 신진인력방문연구지원 수혜자 중 연구기간(지원기간)이 중복되는 자
- 대학·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의 연구비 신청을 제한하며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연구 참여제한

- 본 명저번역지원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 ※ 과제수행의 참여율 계상 : 연구자의 연구참여율을 연구책임자로 참여시 30% 이상,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 20% 이상으로 산정하되, 학술연구조성사업에서의 참여율은 총 50%를 넘을 수 없음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6. 12. 31 이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7.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

책개발 연구과제 및 이공계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과 과학재단 이관사업 중 2004년도에 선정된 선도과학자육성지원연구, 우수여성과학자도약지원연구,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 유망여성과학자경쟁력강화지원연구지원사업의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7. 1. 1. 이후인 선도기초과학연구실(ABRL)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 수행하는 것으로 하되 기타 참여연구원은 연구참여 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동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6. 12. 31. 이전인 과제는 연구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 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은 중지하고 신규지원 사업 연구비에서 지원함

※ 연구보조원은 1인 1과제에 한하여 재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연구기간이 겹치는 2과제에 동시 참여할 수 없음

※ 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급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과제의 결과보고서 미제출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함

IV.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단계별	심사구분	심사내용	비고
1단계	요건심사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 여부	재단
2단계	전공심사	○ 번역업적 및 번역계획서 심사	전공심사단
3단계	종합심사	○ 최종 선정과제 확정	종합심사위원회

2. 심사방법 및 내용

가.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요건 충족여부 등 검토

나. 제 2 단계 : 전공심사

- 심사방법 : 패널심사
- 심사내용 : 번역연구업적, 번역연구계획서, 번역원고 및 번역연구비 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심사내용
번역업적의 수준(30)		○ 번역업적물의 질적 수준
번역능력의 우수성(60)	원문번역의 충실도(20)	○ 원문번역의 정확성 ○ 용어 및 문체의 적절성
	가독성과 완성도(20)	○ 가독성(자연스럽고 정확한 우리말 표현) ○ 고유명사 및 용어표기의 통일성
	역주 등 참고사항(20)	○ 역주 및 역자해설의 충실성 ○ 기존번역과의 차별성(기존 번역본이 있는 경우)
전공분야와의 관련성(10)		○ 연구업적과 번역대상도서와의 체계적 연관성

※ 상기 심사항목 및 내용은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심사자에게 공정한 심사의 책무 등을 서약 받아 심사자의 책임성 고취

다. 제 3 단계 심사 : 종합심사

- 심사주관 : 종합심사위원회
- 심사내용
 - 전공심사 결과 검토
 - 예산 배정 및 선정기준 결정
 - 최종선정과제 확정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함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번역연구비 지급

가.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나. 지급시기

- 지원과제 확정 후 지원 결정 연구비 지급
(단계별 평가결과에 따라 분할 지급함)

구분	1년 과제	2년 과제	지급 대상
1차	3백만원	3백만원	번역권이 확보된 과제(착수금)
2차	번역연구비의 50%	1년차 번역연구비 전액	1차 중간 평가결과 적격과제
3차	-	2년차 번역연구비의 50%	2차 중간 평가결과 적격과제
최종	번역연구비 잔액 지급		번역연구결과보고서 평가결과 출판적격 과제

다. 연구비 사용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2. 번역연구비 관리

- 연구비는 반드시 총괄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이 중앙관리하여야 함.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 번역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번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절 등)로 하였을 때
- 번역대상도서의 한국어번역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비 관리지침(연구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VI. 보고서 제출 및 평가

1. 중간보고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출시기

- 1년과제 : 번역개시 후 6개월 이내 (번역 40% 진행)
- 2년과제
 - 1차 중간보고서: 번역연구개시 후 8개월 이내 (번역 30% 진행)
 - 2차 중간보고서: 번역연구개시 후 16개월 이내 (번역 70% 진행)

나. 제출자료 및 방법

- 번역연구결과물 3부
- 번역연구 중간 개요 보고서 3부
- 번역연구과제 원문 또는 사본 3부
- 제출 방법
 -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를 통해 재단으로 우편 제출하되, 번역연구결과물과 번역연구 중간 개요보고서는 온라인으로도 탑재해야 함

다. 평가방법 : 전문가 패널 평가

- 주관 : 외부전문가
- 항목 : 원문번역의 충실도, 가독성 및 완성도, 역주 등 참고사항
- 평가 자료를 사전 우송하여 전문가 검토 후 패널 평가 실시

라. 평가결과 : 평가등급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번역연구비 지원 중단 및 대학위탁연구비 잔여분 회수

2. 번역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출시기 : 당초 번역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나. 제출자료 및 방법

- 번역연구결과물 (A4용지 출력물) 3부
- 번역 연구결과 개요 보고서 3부
- 번역연구과제 원문 또는 사본 3부
- 번역 연구결과 소개문 3부
- 제출 방법
 -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를 통해 재단으로 우편 제출하되, 번역연구결과물, 번역연구 개요보고서, 번역 연구결과 소개문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내에 온라인으로도 탑재해야 함
- ※ 소개문은 번역과제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

다. 평가방법 : 전문가 패널 평가

- 주관 : 외부전문가
- 항목 : 원문번역의 충실도, 가독성 및 완성도, 역주 등 참고사항
- 평가 자료를 사전 우송하여 전문가 검토 후 패널 평가 실시

라. 평가결과 : 평가등급에 따라 출판적합 여부를 결정함

※ 지원중단 결정시 번역연구비 지원 중단 및 대학위탁연구비 잔여분 회수

마. 번역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번역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연구비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에 대하여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

※ 번역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표절행위 등)로 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

3. 연구결과 발표물 출판

가. 번역결과물의 출판

- 최종 번역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 후 1년 이내에 출판함(재단에서 지정하는 출판사를 통해 통일적으로 출판)

나. 번역도서의 판권

- 초판 출판일로부터 향후 5년간 재단이 소유하고, 그 이후 번역 연구자가 소유함 (e-Book 출판 포함)

다. 출판도서의 판권표시면에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번역도서는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 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6-○○○-○○○○○○○)"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KRF-2006-○○○-○○○○○○○)"

4. 연구성과 Follow-up 시스템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번역연구결과보고서 제출 후에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보고서, 특허, 기술, 발명,

세계인명사전 등재, 언론보도, 인력양성 실적 등)을 게재하여야 하고, 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재단에 송부함

VII. 간접연구비 지원

1. 지원대상 : 선정과제 연구책임자의 소속대학(교) 및 학술단체 등

2. 지원방법

- 2005년도 연구비중앙관리 실태조사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지원

3. 지원비율

- A등급 기관 : 지원결정 연구비의 15% 지원
- B등급 기관 : 지원결정 연구비의 10% 지원
- C등급 기관 : 지원결정 연구비의 5% 지원
- 기타 기관 : 지원결정 연구비의 3% 지원

4. 지원시기

- 지원결정 연구비 지원시 대학으로 일괄 지급

5. 사용범위

-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비

VIII. 기타사항

- 심사 학문분야는 재단의 “연구분야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선택하여야 함
- 신청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자(연구책임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심사결과와 관련된 심사의견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심사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거,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아연구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은 배아 연구기관으로의 등록과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얻어야 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연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문 의 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http://www.krf.or.kr>)

- 사업 관련문의 : 인문학지원팀

TEL (02) 3460-5575, 3460-5573~6, FAX (02)3460-5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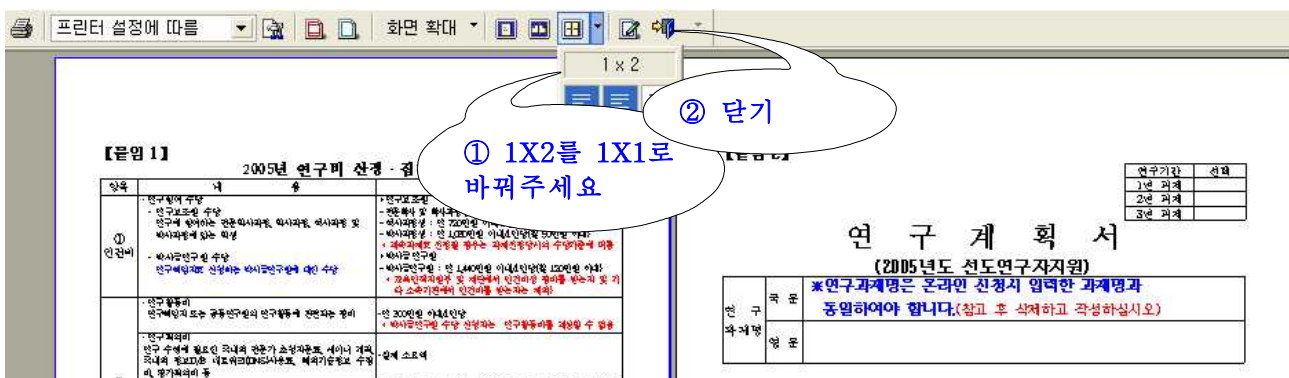
- 전산관련문의(온라인 신청 등) : 학술정보팀

TEL (02) 3460-5541~7, FAX (02)3460-5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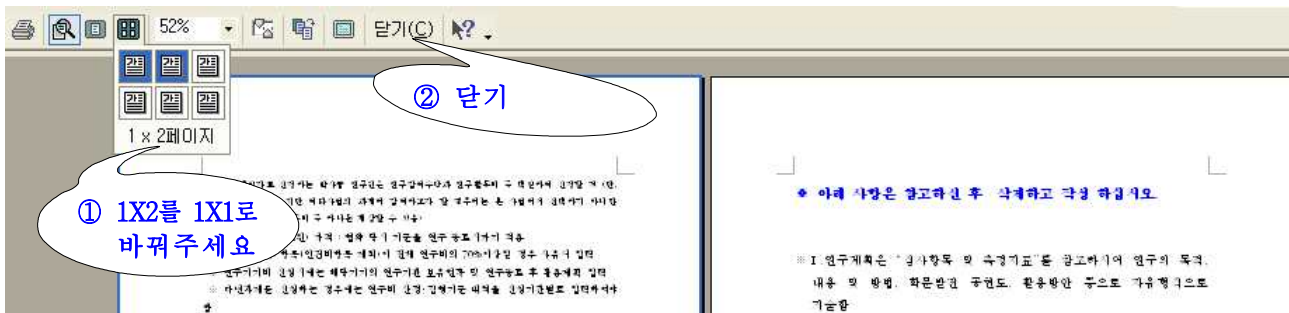
<붙임 1> 파일 탑재시 유의사항

※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시기 전에 인쇄 미리보기에서 인쇄 화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 미리보기에서 아래와 같이 화면에 2쪽 이상이 보일 경우, 아래 각 그림의 ①과 ②를 차례대로 실행한 후 저장하여 주십시오. 저장 후에는 인쇄 미리보기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화면에 1쪽만 보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MS Word]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재단이 심사를 위하여 PDF파일로 변환하게 되는데 수정하지 않은 채 위 형태의 파일을 탑재하시면 글자 및 그림이 겹쳐보이게 되어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파일탑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 접수번호	On-line 신청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

200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번역연구계획서

(사업명 : 명저번역지원사업)

번역연구 과 제 명	원문 :			
	영문 : 영역본을 통해 보완하실 경우에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국문 :			
번역연구 책임자	소 속		학 과(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연구실:() 자택:()		
번역연구 형태	단독번역(), 공동번역()		공동연구원수	명
신청번역 연구비	천 원	원고매수 (예상)		매

- ☞ 번역연구계획서 7부중 겉표지(현재 페이지)는 1부만 붙이고, 나머지 6부는 겉표지를 붙이지 마십시오.
- ☞ 온라인 신청시 탑재하는 파일에는 현재 페이지는 제외하고 <붙임 3>부터 탑재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3 >

200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번역연구계획서

(사업명 : 명저번역지원사업)

번역연구 과제명	원문 :				
	영문 : 영역본을 통해 보완하실 경우에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국문 :				
원문 서지사항	저자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페이지수	사용언어
영역본 서지사항 (영역본을 통한 보완시)	역자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페이지수	기타
번역연구형태	단독번역(), 공동번역()		공동연구원수		명
신청번역 연구비	천 원	원고매수 (예상)			매

- ☞ 연구과제명은 반드시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 번역연구비는 재단의 연구비 산정·집행지침과는 무관한 순수한 번역연구 활동비로서의 연구비이므로 번역과제의 분량 및 언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단, 연구비를 과다 산출한 경우에는 연구비 삭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적정연구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명저번역지원사업 번역연구계획서

※ 연구계획은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되 필요한 사항만을 5쪽 내외로 기술하십시오.

☞ 본 과제 of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됩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청자 및 연구참여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1. 번역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원저자 및 번역대상과제 소개, 해당 도서의 번역 필요성, 선행연구와 번역 연구계획의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십시오

2. 번역연구 추진 계획 및 방법

- 번역추진계획의 구체적 일정, 공동번역의 경우 연구분담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십시오

3. 기타사항 (해당사항만 기술하십시오)

- 국내·외 번역연구동향 또는 번역연구배경
- 번역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연구결과의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방안 등
- 공동 또는 협력 번역연구수행의 필요성
- 기타 번역연구계획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붙임 4>

신청과제 연구참여 구분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원 ()	요약문 번호	
※공동연구원인 경우는 갑, 을, 병 등으로 표시			
연 구 업 적 요 약 문			
업적 형태 구분	저서() 역서() 학술지() 외국특허()		
연구업적 참여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연구업적 제목 (논문, 저·역서, 특허)			
■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특허의 경우 출원일, 출원국가 및 내용 등을 기재)			

※ 온라인 신청시 선택한 연구업적에 대하여 각각 작성하십시오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절대 기재하지 마십시오

<붙임 5>

번역도서 원문사본(목차 포함)을 스캔한 후 PDF 파일로
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양서 : 원문의 핵심적인 부분 30페이지 이상
- 동양서 : 원문의 핵심적인 부분 15페이지 이상

※ <붙임 5>는 별도의 파일로 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6>

<붙임 5>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의 번역 원고를 작성하여
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6>은 별도의 파일로 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명저번역지원 FAQ

1. 전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 ▶ 2005년도에는 번역연구계획서, 번역 실적물, 번역대상 도서 중 번역한 부분의 원문 사본 및 번역 원고를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를 통하여 재단으로 우편 제출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위의 서류를 재단으로 우편 제출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온라인으로 탑재하도록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아래의 내용을 각각의 파일로 작성하시어 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개 파일 탑재)

- ① “번역연구계획서(연구업적 요약문 포함)” (붙임3 및 붙임4 참조)

(hwp, doc 또는 pdf 파일)

- ② 번역대상 도서의 번역한 부분 원문(목차 포함) (붙임 5)

(스캔하여 pdf 파일 탑재)

- 서양서 : 원문의 핵심적인 부분 30페이지 이상
- 동양서 : 원문의 핵심적인 부분 15페이지 이상

- ③ 번역 대상 도서의 번역한 부분 번역 원고 (붙임 6)

(hwp, doc 또는 pdf 파일)

- ▶ 번역 업적의 특성을 감안하고 번역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장려하기 위하여 업적 산정기간을 최근 5년에서 최근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단독 번역출판물이 1종 이상인 연구자 또는 공동 번역출판물이 1종 이상인 자로서 연구실적이 1편 이상인 연구자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번역지정도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지정됩니까?

- ▶ 명저번역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도서를 지정하기 위해 재단은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번역이 필요한 고전과 학술명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추천된 도서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번역대상 지정도서로 선정됩니다.

2006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범주의 도서들을 번역지정도서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 1) 지식·정보화 사회에 진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간상 및 사회상 정립에 도움이 되는 동서양의 명저
- 2) 시중 출판사에서 출간되기 어려운 학술서 중 반드시 번역될 필요가 있는 도서 (단, 우리나라의 고전은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에서 지원할 예정이므로 본 사업에 신청된 과제는 부적격 처리함)

- 3) 학술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지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저작
- 4) 국내외 학술명저 중 이미 출판되었으나 번역상의 오류나 한계가 있어 교정이 필요한 도서
- 5) 2년내 번역가능한 도서

3. 지정도서에 포함되지 않은 도서에 대해서는 자유도서로 신청이 가능합니까?

- ▶ 2004년까지는 자유도서에 대해서도 신청접수를 받았으나, 2005년도부터는 번역지정과제를 300여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유도서에 대해서는 신청받지 않고, 지정도서에 한하여 공모를 합니다.

4. 번역연구비는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 ▶ 예년의 번역연구비는 개인번역연구의 경우는 2천만원, 공동번역연구의 경우는 3천5백만원으로 제한했으나 2002년도부터는 번역연구에 필요한 실질적 연구비를 지원하여 우수한 번역도서를 출간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신청제한액을 폐지했습니다.
- ▶ 신청하고자 하는 번역대상도서의 언어·내용의 난이도 및 분량 등을 고려하여 200자 원고지 1매당 7,000 ~ 12,000원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때 번역연구비는 재단의 연구비 산정·집행지침(연구보조원 수당, 여비 등)과는 무관한 순수한 번역연구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번역연구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 선정된 과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재단의 정책방향에 의거 최고의 번역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며, 번역연구비는 그 평가결과에 의거 분할 지급할 예정입니다.
- ▶ 1년 과제의 경우 중간보고서(전체번역의 40%내외, 역주 등을 포함한 출판가능한 상태)는 번역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는 번역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해당 과제의 전문가에 의한 집중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판단합니다. 2년 과제의 경우는 번역연구개시 8개월 이내에 1차 중간보고서, 번역연구개시 1년 4개월 이내에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는 번역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평가결과의 등급에 따라 계속지원(A·B급), 지원유보(C급) 및 지원중단(D급)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지원유보 결정의 경우엔 연구비 지급을 유예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 제출된 수정보고서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지원중단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재단의 학술연구과제 관리지침에 의거 책정된 연구비에서 기지급한 연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6. 번역 후 출판을 담당할 출판사는 어떻게 정해야 하며, 한국어번역권과 판권은 어떻게 됩니까?

- ▶ 결과보고서 평가에서 출판적합으로 판정된 번역과제는 재단에서 지정한 출판사를 통해 “한국학술진흥재단 동서양학술명저 번역총서”로 출판될 예정입니다.
- ▶ 원저작권자와의 한국어번역권 체결에 대한 문제는 재단에서 해결할 예정입니다. 한국어번역권 체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도서를 추천하실 때와 번역지원을 신청하실 때 도서의 서지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고, 선정되신 후 원저작권자와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또한, 번역출간된 도서의 판권(e-Book출판 포함)은 재단이 5년간 소유하고 그 이후부터는 번역연구자가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